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 : 종류형 C-PE, C-P2E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7월 31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PE : BU617 종류 C-P2E : BU618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5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6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5. 종류 C-PE 수익증권 16. 종류 C-P2E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C-P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2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4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0

		[종류C-P2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2.0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0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E,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/ 펀드코드 C-PE / BU617 C-P2E / BU618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E,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/ 펀드코드 C-PE / BU617 C-P2E / BU618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7월 31일 - 종류형 C-PE, C-P2E 수익증권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종류 C-PE, C-P2E 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종류별 / 가입자격 C-PE /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</td><td>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PE, C-P2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종류 C-PE, C-P2E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</th><th>종류</th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C-PE</th><th>C-P2E</th></tr>
<tr><td>집합투자업자보수</td><td>0.20</td><td>0.20</td></tr>
<tr><td>판매회사보수</td><td>0.34</td><td>0.30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보수</td><td>0.03</td><td>0.03</td></tr>
<tr><td>일반사무
관리보수</td><td>0.02</td><td>0.02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59</td><td>0.55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59</td><td>0.55</td></tr>
<tr><td>합성총보수및비용</td><td>1.59</td><td>1.55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163</td><td>514</td><td>900</td><td>2,050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E</td><td>159</td><td>501</td><td>878</td><td>1,998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4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배당1Q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- 종류형 C-P2E 신설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7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C-P2E : BU619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4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4. 종류 C-P2E 수익증권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 C-P2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C-P, C-P2, C-PE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투자설명서를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· 종류 C2~C4, C-F, S, C-P, C-P2, C-PE, C-P2E의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

	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: C-P2E / 펀드코드: BU619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: C-P2E / 펀드코드: BU619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7월 31일 - 종류형 C-P2E 수익증권 신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종류 C-P2E 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종류별: C-P2E /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**가. 매입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종류 C-P2E 신설>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**가. 매입** (2)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: C-P2E /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table><tr><td></td><td>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C-P2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C-P2E 신설>

<br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자투자회사(제2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7월 31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4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4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5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7% 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위험등급**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68% 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7월 31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
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7% 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68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

		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・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・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・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
	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(생략)	**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아시안리츠 부동산 투자신탁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형 A-E, C-E, C-PE, C-P2E 신설
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7월 31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 A-E : BU623 종류 C-E : BU622 종류 C-PE : BU621 종류 C-P2E : BU620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11. 종류 A-E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12. 종류 C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13. 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4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
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<추가>	제1항 11. 종류 A-E 수익증권 12. 종류 C-E 수익증권 13. 종류 C-PE 수익증권 14. 종류 C-P2E 수익증권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2항 4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. (생략)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제2항 4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. (현행과 동일)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A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5 [종류C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5 [종류C-P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4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5 [종류C-P2E 수익증권]

		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연 1000분의 5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연 1000분의 0.25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	3. 종류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0% 이내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주석사항 · 종류 C-F, W, I, S, C-P, C-P2, AG, CG 수익증권의 보수 세부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주석사항 · 종류 C-F, W, I, S, C-P, C-P2, AG, CG, A-E, C-E, C-PE, C-P2E 수익증권의 보수 세부내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1. 과세**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	**1. 과세**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/ 펀드코드 A-E / BU623 C-E / BU622 C-PE / BU621 C-P2E / BU620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집합투자기구 명칭 (종류형 명칭) / 펀드코드 A-E / BU623 C-E / BU622 C-PE / BU621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table><tr><td>C-P2E</td><td>BU620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년 07월 31일
- 종류형 A-E, C-E, C-PE, C-P2E 수익증권 신설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-E</td><td>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td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td></tr><tr><td>종류 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집합투자증권 투자
-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집합투자증권 투자
-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투자하는 행위

- (생략)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td><td>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(현행과동일)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제2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종류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-E</td><td>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td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td></tr><tr><td>C-P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사항</td>
<td>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-E, C-E, C-PE, C-P2E 신설></td>
<td>종류 A-E
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50%이내 /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
종류 C-E, C-PE, C-P2E
선취판매수수료, 후취판매수수료, 환매수수료 : 없음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4">지급비율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종류 A-E</th><th>종류 C-E</th><th>종류 C-PE</th><th>종류 C-P2E</th></tr>
<tr><td>운용</td><td>0.550%</td><td>0.550%</td><td>0.550%</td><td>0.550%</td></tr>
<tr><td>판매</td><td>0.300%</td><td>0.600%</td><td>0.240%</td><td>0.200%</td></tr>
<tr><td>신탁업자</td><td>0.050%</td><td>0.050%</td><td>0.050%</td><td>0.050%</td></tr>
<tr><td>일반관리</td><td>0.025%</td><td>0.025%</td><td>0.025%</td><td>0.025%</td></tr>
<tr><td>보수합계</td><td>0.925%</td><td>1.225%</td><td>0.865%</td><td>0.825%</td></tr>
<tr><td>기타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tr><td>총보수및비용</td><td>0.925%</td><td>1.225%</td><td>0.865%</td><td>0.825%</td></tr>
<tr><td>증권거래비용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td>실비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
<tr><td>종류 A-E</td><td>145</td><td>349</td><td>574</td><td>1,242</td></tr>
<tr><td>종류 C-E</td><td>126</td><td>396</td><td>694</td><td>1,579</td></tr>
<tr><td>종류 C-PE</td><td>89</td><td>279</td><td>490</td><td>1,115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E</td><td>85</td><td>267</td><td>467</td><td>1,063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</td>
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</td>
</tr>
</table>

사항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 수익증권 가입자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종류 C-P, C-PE 수익증권 가입자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